

고성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안

의안번호	705
------	-----

제출년월일 2001. 8. 20
제 출 자 고성군수

1. 제정사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고성군정기·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비자보호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장개설 및 시설기준 (안 제3조)

- 대지면적이 정기시장은 1,000제곱미터이상, 임시시장은 330제곱미터이상
- 시장내의 급수·배수·위생시설 등의 시설설치 규정

나. 정기시장의 관리운영(안 제4조)

다. 임시시장의 개설 지정기준 및 지정의 취소 규정(안 제7조)

라. 입주 상인의 공동이익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임시시장 개설지정자에게 책무 부여(안 제10조)

마. 정기시장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및 사용허가 취소대상 (안 제11조, 제14조)

바. 시장 사용료의 징수 기준액, 납기, 환급, 감면에 관한사항 (안 제15조 내지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정기시장 등의 개설 등)

나. 입법예고 : 결과 의견 내용 없음

4. 본 문 : 덧붙임

고성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시장 및 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개설방법·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임시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①시장은 군수가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면적이 정기시장은 1,000제곱미터 이상, 임시시장은 3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화장실),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정기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설일 30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개설일 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장명
2. 개설일
3. 소재지
4. 대지면적 및 건축 연면적
5. 편의시설 및 기타

제2장 관 리

1절 정기시장

제4조(관리운영) ①군수는 정기시장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관리인을 지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징수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인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정기시장을 휴업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지일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인의 의무) 시장관리인으로 지정 받은 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장내의 공유시설물의 유지관리
2. 시장내의 청결유지
3. 관계법령준수 및 이 조례에 정한 군수의 지시사항 이행

제6조(관리인의 지정 및 위탁취소)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관리인으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장관리인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정기시장 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기시장의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
3. 위탁관리인이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절 임시시장

제7조(임시시장개설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시장의 개설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1과 같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한 시장개설등록 자
2. 농·축·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축·수산업협동조합법인
3. 시장번영회 등 군수가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 받은 경우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
4.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 받은 후 14일 이내에 시장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개설신청 및 지정) ①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장개설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개설기간)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개설되는 임시시장은 재개발사업 완료 시까지로 한다.

제10조(책무) ①임시시장 개설 지정자는 입주 상인의 공동이익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상거래 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지도
2.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3.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 증진
4.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의 지도
5. 입주 상인을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

②임시시장 개설지정자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업무규정 및 사업계획의 범위 안에서 시장내의 입주상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정기시장 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①정기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점 및 1일 이하 사용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군수가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정기시장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또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정기·임시시장 개설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 정기시장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기간내에 시장사용을 폐지 또는 휴업한 때
2. 시장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

제13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정기시장 사용권을 상속인이 상속으로 승계할 경우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임대 할 수 없다.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기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면적 및 설비내역을 변경한 경우
2. 시장내 유류 및 폭발성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정기시장을 오손하거나 기타 질서 유지상 위해한 행위를 한 경우
3.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업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0일 이상 계속 휴업을 한 경우

제4장 사 용 료

1절 부과징수

제15조(사용료) ①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재개발 이전의 기존시장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재개발 이후 현대화된 시장과 임시시장에 대하여는 별표2의 사용료 기준에 의거 납입하여야 한다.

②3.3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3인 이상이 사용할 때에는 기준액의 반액을 각각 징수한다.

③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④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 받은 자가 개설한 임시시장의 사용료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료 납기) 정기시장 사용료는 1년분 사용료를 선납 하여야 하며, 일일 사용에 있어서는 사용 당일에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개설한 임시시장의 사용료는 사용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료 환급) 시장사용권이 취소 또는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잔여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 허가된 시장의 화재 등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2. 기타 시장 변영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절 위탁징수

제19조(위탁징수) ①군수는 정기시장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정기시장 사용료를 개인이나 법인 또는 시장변영회 등에 위탁징수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징수자의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변영회가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변영회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사용료 기준액의 범위 안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징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20조(계약이행보증금 등) ①위탁징수자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증금 납입을 대신하여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제21조(위탁징수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징수자가 될 수 없다.

1. 고성군내 주민이 아닌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질병 기타사유로 위탁징수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2조(사용료 납입) ①위탁징수자는 매달마다 그 달 말일이내에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용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이를 충당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위탁징수자가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4조(개선명령) 군수는 정기시장의 운영 합리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입주 상인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는 시장번영회로 하여금 시장내의 청결유지 등을 위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5조(원상회복) 정기시장 사용자가 군수의 허가 없이 정기시장 설비를 변경, 훼손한 때나 새로 설비를 한 때에는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26조(변상금) 정기시장을 군수의 허가없이 무단사용수익 하는 자는 지방재정법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청문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6조의 시장관리인의 지정 및 위탁취소
2. 제7조제2항의 임시시장 개설 지정취소
3. 제14조의 정기시장 사용허가의 취소
4. 제23조의 위탁징수 계약의 해지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허가된 공설시장 사용자 및 공설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 또는 개설된 것으로 본다.
-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재개발 이전의 정기시장 사용료 징수기준

요일 구분			기 준	요금(단위 : 원)		비 고
				1급지	2급지	
상 설 시 장	점 포 장	1등지	3.3㎡ 당 월	980	840	○ 급지의 구분 - 1급지 : 읍지역 - 2급지 : 면지역 (당동시장)
		2등지	“	560	420	
		3등지	“	250	140	
	옥	1등지	3.3㎡ 당 월	700	560	
		2등지	“	340	280	
		3등지	“	140	90	
노 점	1등지	3.3㎡ 당 월	420	340	○ 등지구분 - 1등지 : 2면이상 도로접합 장옥,토지 - 2등지 : 1면이상 도로접합 장옥,토지 - 3등지 : 그외지역	
		3.3㎡ 당 매시일	30	30		
		월	230	170		
	3등지	3.3㎡ 당 매시일	20	20		
		월	140	112		
		매시일	10	10		
정 기 시 장	장 옥	1등지	3.3㎡ 당 종일	120	100	○ 종일, 일지구분 - 종일 : 3시간 이상 - 일시 : 3시간 미만
			3.3㎡ 당 일시	60	60	
		2등지	3.3㎡ 당 종일	70	60	
			3.3㎡ 당 일시	40	30	
		3등지	3.3㎡ 당 종일	50	40	
			3.3㎡ 당 일시	30	20	
	노 점	1등지	3.3㎡ 당 평일	70	60	
			3.3㎡ 당 일시	40	30	
		2등지	3.3㎡ 당 평일	20	20	
			3.3㎡ 당 일시	10	10	
		3등지	3.3㎡ 당 평일	20	20	
			3.3㎡ 당 일시	10	10	
시한 및 노점 시장	화물자동차 손 수 례	매시일 대당	170	120		
		매시일 대당	30	20		
노점 시장	화물자동차 손 수 례	매시일 대당	170	120		
		매시일 대당	30	20		

[별표 2]

1. 재개발 이후의 정기시장 점포 사용료 징수기준

구 분		기 준	비 고
점포배점	배정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재 건축전의 영업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중 노점상 및 기타 <p>※ 업종별 점포배치계획에 의거 배정하며, 과다 신청시는 공개 추첨</p>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은 1점포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시장 여건에 맞게 가감할 수 있다. ○ 시장 점포는 타용도 사용불가함. 	
점포사용료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료 산출 적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조(사용허가 기간) - 제13조(사용허가 조건) - 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 제24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 노점상은 “별표 1”의 기준 적용(정기시장 1등지 2급지 적용)
	사용료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기간 : 매년 재계약 또는 3년 이내로 한다. ○ 징 수 :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5조에 의함 	
시장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관리는 시장 번영회에서 운영 ○ 노점상 사용료는 시장 번영회 자금으로 운영 ○ 시장관리에 필요한 제공과금과 간단한 수선비는 시장 번영회에서 부담한다. 	

2. 임시시장

구분	기 준	사 용 료 (원)	비 고
매 점	1일 1㎡당	토지가격(공시지가) X 1/1,000	

제 호

임시시장 개설자 지정서

- 시장 명 :
- 소재 지 :
- 개설 자 :
 - 법인 명 :
 - 대표 자 :
- 영업장 규모 :
 - 개설 면 적 :
 - 매장 면 적 :
- 개설 기 간 :
- 판매 상 품 :

고성군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사용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제 호

정기시장 사용허가증

1. 사용자 주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2. 시장의 명 칭 : 시장
3. 영업장 소재지 : 고성군 읍(면) 리 번지
4. 사 용 면 적 : m'(점포·장옥·노점)
5.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6. 업 종 :
7. 허 가 조 건 :

가. 정기시장 사용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나. 사용료는 매년 1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기간 경과시 가산금 부과됨)

다. 장옥의 개 보수를 요할 시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라. 온돌시설은 일체 금한다.

마. 가스 등 위험시설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정기시장 사용재산에 대하여는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며,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사. 고성군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사용조례 규정에 위반될 시는 허가를 취소한다.

고성군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사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